

학교법인 북제학원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2016. 9. 1		
이사정수	8명	참석이사	7명

1. 회의일시 : 2016. 9. 9(금) 11:00
2. 회의장소 : 학교법인 북제학원 이사장실.
3. 참석이사 : 이사장 김수엽, 이사 김진후, 최윤호, 우재복, 김진태, 이종구, 홍수성
4. 불참이사 : 없음
5. 회의안건
 - ① 정관변경
 - ② 법인 임원 선임
 - ③ 중고등학교 교원·일반직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선임
 - ④ 2016학년도 중학교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
 - ⑤ 2016학년도 고등학교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
6. 회의내용

○ 행정부장 김 춘 임

행정부장의 성원보고에 의하여 이사장님께서 개회를 선언함.

○ 이사장 김수엽

이사장의 간단한 인사와 행정부장에게 전 이사회의 회의록을 낭독하도록 하였음.

김수엽	기진태
우재복	이종구
김진후	홍수성
최윤호	

○ 행정부장 김 춘 임

전 이사회의 회의록을 빠짐없이 낭독 하였음.

○ 이사장 김수엽

전 이사회의 회의록 내용의 이상 유무를 물자 참석 이사 전원 이의 없다고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였음.

○ 이사장 김수엽

그럼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행정부장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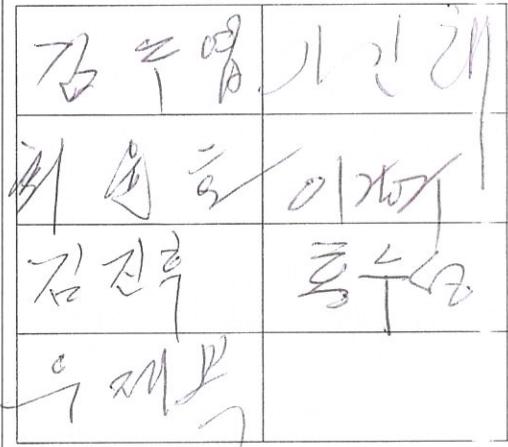
○ 행정부장 김 춘 임

본 법인 정관을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정관 변경 신구대조표

구	신
제 39 조 (임면) ① ~③ (현행과 같음)	제 39 조 (임면)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1. 배우자	1. -----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2. -----

<p>(신 설)</p> <p>⑥ (현행과 같음)</p> <p>40 조 (휴직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u>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u>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u>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u>병역법</u>의 규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 6 (현행과 같음) 7. <u>자녀(만8세 이하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u> <p>(신 설)</p> <p>8 ~ 10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2 (현행과 같음)</p> <p>3. 제4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u>3월이내로 한다.</u></p> <p>4 ~ 5 (현행과 같음)</p> <p>6. <u>제 40 조 제 7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은 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7 ~ 10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신 설)</p> <p>제 43 조 (휴직 교원의 처우)</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 40 조 제 2 호 내지 제 4 호와 제 6 호 <u>내지 제 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p> <p>제 56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u>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u> 다만, 학교법인 이사인 위</p>	<p>⑤ 학교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자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⑥ (현행과 같음) (신설 2016.09.09.)</p> <p>40 조 (휴직의 사유) ① ----- --- 교원의 임용권자는 ----- --- 임용권자는 ----- --- 7호 및 제7호의2 -----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u>병역법</u>」의 규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 6 (현행과 같음) 7. <u>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u> <u>7의 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u> 8 ~ 10 (현행과 같음) 11. 「<u>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u>」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u>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u>」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연구 등이 필요하거나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신설 및 일부개정 2016.09.09.)</p> <p>제 41 조 (휴직의 기간) ----- ----- 1. 제40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u>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u>」에 따른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현행과 같음) 3. 제4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u>3개월 이내로 한다.</u> 4 ~ 5 (현행과 같음) 6. <u>제40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제7호의 2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u> 7 ~ 10 (현행과 같음) 11. <u>제40조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u> 12. <u>제40조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u> (신설 및 일부개정 2016.09.09.)</p> <p>제 43 조 (휴직 교원의 처우)</p> <p>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2호 ----- ----- (일부개정 2016.09.09.)</p> <p>제 56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 ----- ② ----- 다음 각호 중에서 ----- -----</p>
--	--



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
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한 자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 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
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자가 아닐 것

④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및 일부개정 2016.09.09.)

제56조의 2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대행,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
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
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6조 4항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16.09.09.)

제 60 조 (진상 조사 및 의견서 개진) ① 교
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 의결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 의결 할 수 있
다.

(신설)

제 62 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
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부칙신설)

제 60 조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09.09.)

제 62 조의 2 -----

----- 3년 -----

(일부개정 2016.09.09.)

부칙
이 정관은 2016.09.09.부터 시행한다

김수엽	기간 3년
이기자	기간 3년
김진후	기간 3년
우재복	

○ 이사장 김수엽

행정부장의 안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사님들께서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사 김진후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정관변경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이사 최윤호

김진후 이사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 이사 우재복

삼청입니다.

○ 이사장 김수엽

김진후 이사의 동의에 재정과 삼청이 있었습니다.
의의가 없으신지요.

○ 이사전원

의의가 없다고 함.

○ 이사장 김수엽

본인도 김진후 이사의 동의에 찬성하며 이사전원 만장일치의 찬성이 있으므로 법인 정관 변경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심의 하겠습니다. 법인 임원 선임에 관한 건입니다.
행정부장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 행정부장 김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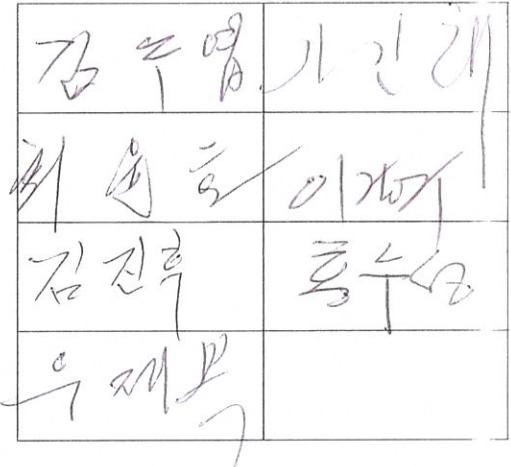
본 법인의 임원중 김형권 이사님의 임기가 2016. 8. 9일자로 만료되어 정관 제19조(임원의 임기), 제20조(임원의 선임 방법),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선임)의 규정에 의거 감독체에 임원 취임 승인 신청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이사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임원 결원자 명단

성명	직명	생년월일	임기	교 경력 연수	결원사유	결원사유 발생일	비고
김형권	개방이사	34. 1.31	2011. 8.10 - 2016. 8. 9	37	임기만료	2016. 8. 9	

○ 이사장 김수엽

그럼 김형권 이사의 임기 만료로 결원되는 교육경력 개방 이사를 선임하겠습니다.
행정부장은 추천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이사 선임대상자 추천 명단

성명	생년월일	교육 경력년수	주요 경력	비고
송택상	55. 12. 25	34	현 학산고등학교 교장	
유동완	58. 7. 8	30	현 학산중학교 교장	

○ 이사장 김수엽

이사님들께서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의 개방이사 선임대상자 중 1명의 결원 이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최윤호

임기가 만료되는 개방형 이사에 추천자 중 교육경력이 풍부한 고등학교 송택상 교장을 추천합니다.

○ 이사 김진태

김형권이사가 2016. 8. 9일자 임기가 만료되어 발생하는 결원 개방이사에 고등학교 송택상 교장을 개

방형 이사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이 사 이 종 구

김진태 이사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 이 사 흥 수 성

삼청입니다.

○ 이 사 장 김 수 엽

김진태 이사의 동의에 재청과 삼청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신지요.

○ 이 사 전 원

이의가 없다고 함.

○ 이 사 장 김 수 엽

본인도 김진태 이사의 동의에 찬성하며 결원되는 개방이사에는 송택상 교장이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심의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원 및 일반직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선임 건입니다.

행정부장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 행정부장 김 춘 임

사립학교법 제62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정관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정관 제84조(징계 및 재심청구) 규정에 교원 및 일반직 징계위원회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어 이사회의 회의자료와 같이 징계위원회를 조직한 바 있으나,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정관 제55조가 변경되어 의무적으로 외부위원을 선임하게 되어 징계위원회를 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징계 외부위원 선임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 쿠영	기 간 대
김 동호	이 가기
김 진우	홍 누리
우 재복	

○ 이 사 최 윤 호

행정부장의 설명을 들어본 바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위원회를 재조정하는데 이의가 없으며 신규 선임되는 징계 위원으로 중학교는 김용환 위원을 대신하여 김동호, 고등학교는 김성기 위원을 대신하여 김재근을 추천합니다.

○ 이 사 우 재 복

적절한 인물이 추천 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임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이 사 김 진 태

우재복 이사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 이 사 이 종 구

삼청입니다.

○ 이 사 장 김 수 엽

우재복 이사의 동의에 재청과 삼청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신지요.

○ 이 사 전 원

이의가 없다고 함.

○ 이사장 김수엽

본인도 학산중고등학교 교원 및 일반직 징계 외부위원을 교육 경력이 풍부한 중학교는 김동호, 고등학교는 김재근으로 선임하자는 우재복 이사의 동의에 찬성하며 이사님 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두 분을 선임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2016학년도 중학교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행정부장은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 행정부장 김춘임

2016학년도 중학교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의 중요 요인으로는 인건비 증액 및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외 25건의 목적사업보조금 지원으로 각 사업별 예산이 증액되어 예산액의 증감이 발생하여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학년도 제1회 중학교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총괄표>

(금액:천원)

세 입					세 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259,970	3,227,586	93.9	인적자원 운용	55,882	2,648,954	76.9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10,306	13,509	0.3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91,156	227,101	6.7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24,739	188,883	5.5	기본적 교육활동	61,411	190,684	5.6
자체수입	행동활동수입	34	2,671	0.1	선택적 교육활동	670	81,370	2.4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2,940	8,058	0.2	교육활동 지원	16,930	91,078	2.7
					학교 일반운영	22,802	177,330	5.1
					학교시설 확충	-340	22,660	0.6
					학교 재무활동	0	1,530	0.0
세 입 합 계		248,511	3,440,707	100	세 출 합 계	248,511	3,440,707	100

○ 이사 흥수성

행정부장의 설명을 들어본바 주로 각종 보조사업에 의하여 추경을 하게 되어 2016학년도 제1회 중학교회계 추가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수영	이진희
이기화	이기화
김진희	홍수성
우재복	

○ 이사 이종구

홍수성 이사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 이사 우재복

삼청입니다.

○ 이사장 김수엽

홍수성 이사의 동의에 재청과 삼청이 있습니다.

의의가 없으신지요.

○ 이사 전원

의의가 없다고 함.

○ 이사장 김수엽

본인도 홍수성 이사의 동의에 찬성하며 이사전원 만장일치의 찬성이 있으므로 2016학년도 중학교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총액 3,440,707,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이사장 김수엽

다음은 2016학년도 고등학교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행정부장은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 행정부장 김춘임

2016학년도 고등학교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의 중요 요인으로는 인건비 증액 및 학교급식비 지원외 41건의 목적사업보조금 지원으로 각 사업별 예산이 증액되어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학년도 제1회 고등학교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총괄표>

(금액:천원)

세 입					세 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2,000	2,000	0	인적자원 운용	76,478	3,843,300	57.7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3,000	43,000	0.7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825,129	1,700,931	25.6
이전수입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1,340,585	5,305,579	79.6	기본적 교육활동	237,721	412,805	6.2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417	7,779	0.1	선택적 교육활동	101,073	189,093	2.9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49,667	1,284,201	19.3	교육활동 지원	26,012	125,565	1.8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197	5,348	0.1	학교 일반운영	-475	258,666	3.9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15,046	18,046	0.2	학교시설 확충	85,650	132,775	1.9
					학교 재무활동	0	2,818	0.0
세 입 합 계		1,351,588	6,665,953	100	세 출 합 계	1,351,588	6,665,953	100

○ 이사 김진태

행정부장의 설명을 들어본바 인건비 및 보조사업의 증감으로 인하여 추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2016학년도 제1회 고등학교회계 추가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이사 김진후

김진태 이사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김주영	기진태
이기자	이기자
김진후	홍수근
유재현	

○ 이사 우재복

삼청입니다.

○ 이사장 김수엽

김진태 이사의 동의에 재청과 삼청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신지요.

○ 이사 전원

이의가 없다고 함.

○ 이사장 김수엽

본인도 김진태 이사의 동의에 찬성하며 이사전원 만장일치의 찬성이 있으므로 2016학년도 고등학교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총액 6,665,953,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이사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이사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 장

김 수 엽 (인)

김수엽

이 사

김 진 후 (인)

김진후

이 사

우 재 복 (인)

우재복

이 사

최 윤 호 (인)

최윤호

이 사

김 진 태 (인)

김진태

이 사

이 종 구 (인)

이종구

이 사

홍 수 성 (인)

홍수성